

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개정이유서

의안번호	186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7. 2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① 시상부문이 2개부문(효행선행, 교육문화)으로 제한되어 있어 타부문 공적 기여자는 추천불가, 특히 우리구는 신평·장림공단의 소재로 산업근로 부문을 추가하여 신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및 경영자를 발굴 시상, 그 공적을 선양
- ②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구간부로 구성되는 위원은 직제개편으로 위원이정은 불합리하여 구간부를 지정치 않고 매년 심사시 구청장이 임명토록 조정하고 위촉위원 분야 중 구의원을 명시, 포함함으로써 구민여론 수렴과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함.

2. 개정내용

- ① 조문 수정
 - 4 조(포상의 종류) : 시상부문 확대 2개부문→3개부문
 - 7 조(자랑스런 구민상) : 선정기준(산업근로부문 추가)
 - 13조(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) : 심사위원 조정
 - 14조(포상시기) : 시상 인원 2개부문→3개 부문으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
- ② 포상용지 규격, 기념휘장 규격 및 제식 수정(상징마크제정 관련)

3. 신·구조문 대비표(안) : 별첨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